

※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」 개정에 따른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, 실내장식물 등 설치 공사 시 방염대상 물품 및 권장물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) <시행 2019.8.6.>

방염대상	
·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(수영장 제외)	· 노유자시설
·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	·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
· 방송국 및 촬영소	· 11층 이상인 것 (아파트 제외)
·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[추가]	· 다중이용업소
· 종합병원, 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의원 [추가]	

■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장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) <시행 2019.8.6.>

기존 방염대상물품		개정 방염대상물품	
법적 대상	· 커튼류 · 카펫 · 벽지 (두께 2mm 미만) · 합판, 목재 · 암막, 무대막 · 간이 칸막이 등	법적 대상	· 커튼류 · 카펫 · 벽지 (두께 2mm 미만) · 합판, 목재 · 암막, 무대막 · 간이 칸막이 등
권장 대상	· 침규류, 소파, 의자	권장 대상	· 침규류, 소파, 의자 · 천장,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(옷장, 찬장 등) [추가]

■ 벌칙사항

-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: 과태료 200만원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)
-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위반 시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)

문의처 : 용산소방서 예방과 ☎ 02) 6943-1474



용산소방서 예방과